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중도부가서비스특약

## 2. 중도부가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특약을 추가로 부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가”에 의하여 중도에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은 **중도부가 신청시점에**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중인 특약 중 회사가 정한 특약으로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 또는 면제된 경우
- (3) 중도부가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료 납입이 이미 면제된 경우
- (4) 감액완납된 경우
- (5) 기타 회사가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한 경우

## 3. 중도부가특약의 부가 및 효력에 관한 사항

가. 이 특약에 따라 **중도에 추가로 부가하는 특약(“중도부가특약”이라 하며 이하 동일함)**에 가입할 경우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중도부가일(**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하며 이하 동일함**)을 기준으로 가입나이,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정한다. 다만,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와 동일해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가 비월납(일시납 제외)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매 보험료 납입월에 한해 중도부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나. 중도부가특약에 따른 회사의 보장개시일

- (1) 중도부가특약의 가입신청을 회사가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2) 제1회 보험료를 받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3) 1),2)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도부가특약에 암보장개시일 등과 같이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개시일

다. 중도부가특약의 특약계약일은 “나” 항의 1) 및 2)에서 정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한다.

라. 중도부가특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거절, 계약자의 청약철회, 취소, 무효, 해지, 2년 이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의 효력, 암보장개시일에 관한 조항과 관련한 청약일, 계약일 및 보장개시일 등은 해당부가특약의 중도부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3. 중도부가특약의 부가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의 “가” 항에서 정한 가입나이를 기준으로 중도부가일에 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 보험료로 한다.

나. 중도부가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음에도**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는 제외함)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라.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이 특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당 중도부가특약을 해지한다. 단, 이 경우에도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 5. 기타사항

이 특약에서 정한 내용과 주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특약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기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내용을 적용한다.